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8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김위상 · 이종배 · 우재준  
김미애 · 추경호 · 김선교  
구자근 · 강승규 · 박정훈  
박충권 · 박성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4.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및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된 사건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건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3까지,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p> <p><u>1. 감사원</u></p> <p><u>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u></p> <p><u>3. 지방자치단체의 장</u></p>	<p>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u></p> <p><u>1. 직무와 관련된 사건</u></p> <p><u>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 행위와 관련된 사건</u></p> <p>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u>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u></p>

### 대한 불응

4.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  
와 실화의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  
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  
장 살인의 죄 및 제39장 사기  
와 공갈의 죄와 관련된 사건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건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  
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  
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  
의9부터 제5조의13까지, 제6  
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  
중처벌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